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63,259,408	34,897,782
일반회계	1,066,163,268	31,984,898
특별회계	97,096,140	2,912,884
공기업특별회계	87,079,623	2,612,389
상수도사업	50,377,407	1,511,322
하수도사업	36,702,216	1,101,066
기타특별회계	10,016,517	300,496
의료급여기금	2,578,308	77,3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26,649	6,799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95,559	8,86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6,663	4,400
수질개선관리	3,913,196	117,396
중소기업육성자금	2,856,142	85,68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02,285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9,4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